

세무회계저널
제9권 제1호 2008년 3월 pp.125~144
한국세무학회

과세공평성 지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박주철* · 이남우**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과세공평성 지각과 같은 납세자의 내적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세불공평성을 지각하는 납세자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수평적 불공평성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신고소득금액을 줄여 납부세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이에 세율이 동일한 두 집단의 경우 과세불공평성을 인식하는 집단의 신고소득액은 과세공평성을 지각하는 집단의 그것에 비하여 유의한 음(-)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납세자의 신고소득액 결정에는 세율, 과세불공평성 지각유무, 세율과 과세불공평성 지각유무와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소득세 납부 경험이 있는 세무회계과에 재학 중인 산업체위탁교육생을 상대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 세율상황과 40% 세율상황 모두에서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의 신고소득액은 과세공평성 인식집단의 신고소득액에 비하여 유의한 음(-)의 차이를 보였으며 40% 세율상황에서는 차이의 유의성이 더 컸다. 이는 과세불공평성 인식이 납세자의 납세불순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실험참가자의 신고소득액 결정에 있어서 세율변화, 과세불공평성 인식, 세율변화와 과세공평성 인식 여부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신고소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세율(20%, 40%)과 과세불공평성 인식유무(공평성 인식, 불공평성 인식)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세불공평성 인식 주효과는 유의적이었지만 세율 주효과, 세율과 과세불공평성 인식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세공평성 인식집단과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과의 신고소득액의 유의한 차이는 과세불공평성 인식이 공격적 세무신고(신고소득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과세공평성, 납세순응, 분산분석

* 울산과학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jcpark@mail.uc.ac.kr, 052-20-0713, 제1저자

** 울산과학대학 세무회계과 조교수, tree@mail.uc.ac.kr, 052-230-0714,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07년 11월

게재확정일 2008년 3월

I. 서론

납세순응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다. 첫 번째는 과세소득의 원천에 따라 납세순응이 다르다는 것과, 두 번째는 조세체계, 즉 세율,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 징벌적 가산율 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납세자의 내적 인식, 즉 과세공평성 지각이나 도덕적 이성 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소득원천의 유형, 조세체계, 납세자의 내적 인식) 중에서 납세자의 내적 인식에 따라 납세순응이 달라지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내적 인식에는 과세공평성 지각과 납세도의(moral reasoning) 등이 거론될 수 있으나 납세도의의 경우 도덕감의 수준측정 등 실험상황 설정이 어려우므로 과세공평성 지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소득수준결정(납세순응)에는 조세회피로 인한 납부세액 감소와 조세회피가 적발되었을 때의 징벌적 규제와의 교환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제적 유인과 이에 더하여 수평적·교환적 불공평성의 지각이 납세자의 과세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ser et al. 1995). 수평적 불공평성은 동일소득, 동일비용임에도 다른 납세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일어난다. 교환적 불공평성은 납세의무자들이 정부와의 교환이 불공평하다고 지각할 때 일어난다. 즉 납세의무자들이 지불하는 조세가 그들이 받는 공공재와 서비스의 혜택을 초과한다고 믿는 때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재나 서비스의 수준이 일정할 때 세율이 상승하면 교환적 불공평성은 증가할 것이다. 공평성이론은 그러한 불공평성을 지각하는 개인들이 그것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행동한다고 예측한다. 과세공평성 이론의 보편적 해석은 이러한 불공평성이 증가할 때 상대적 불공평성을 지각하는 납세의무자들은 신고소득을 줄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불공평성과 교환적 불공평성을 조작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평적 불공평성은 일군의 피실험자 집단의 세율이 다른 피실험자 집단의 세율보다 높게 함으로써 상대적 불공평성을 지각하게 하는 것이고, 교환적 불공평성에서는 공공재나 서비스는 균등하게 하면서(본 연구에서는 공공재나 서비스는 0임) 세율이 증가함으로써 피실험자들이 조세가 그들이 이전에 받던 공공재나 서비스의 혜택을 초과한다고 지각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수평적 불공평성을 지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 불공평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가에 관한 실험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목적을 기술한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납세순응에 관한 경제적 이론과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가설설정과 실험설계를 한다. 제4장에서 가설검정에 관한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1) 납세순응은 자신의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순응이 높다는 것은 회피세금이 낮다는 의미이다. 납세순응의 정도는 소득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실제소득에서 신고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Collins and Plumlee 1991).

II.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납세순응에 관한 경제적 이론

세무신고모델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적 이론 접근법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고정변수로 보고 납세의무자는 기대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세무신고누락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와 세무신고누락으로 인한 납부세액감소의 기대효용과의 교환관계에 의하여 소득을 얼마만큼 신고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Allingham and Sandmo(1972), Yitzhaki(1974)에 의하여 개발된 납세순응에 관한 경제적 이론의 기본 모델은 납세자의 위험회피수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세율인상은 신고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위험효과와 재산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첫째, 위험효과는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신고누락으로 인한 도박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도박위험이란 신고누락분이 있을 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의 납부세액(추징세액포함)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의 납부세액과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세율이 높을수록 신고소득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세율인상시 신고누락 적발에 따른 추징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위험효과로 인하여 위험회피 납세의무자들은 세율인상에 따라 소득을 더 신고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세율인상은 납세자들의 부(재산)를 감소시킨다. 재산효과란 납세자들이 소득증가에 따른 절대적 위험회피수준의 감소를 보이는 위험회피자일 때(Moser et al. 1995), 세율 인상으로 줄어든 소득이라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신고소득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소득신고를 적게 함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징벌적 가산세는 세율인상으로 줄어든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기 때문에 재산방어 차원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신고누락분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순응에 관한 경제적 이론은 납세자를 세후소득 극대화 추구자로 간주할 뿐 납세자의 도덕감이나 과세불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 등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도덕감이나 과세불공평성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납세자의 소득신고행위가 납세순응에 관한 경제적 이론에서와 같이 세율인상에 따라 신고소득액이 높아지지 않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예로서 Moser et al.(1995)의 연구가 있다.

Moser et al.(1995)은 납세자들이 다른 납세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세율인상에 따라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수평적 불공평성하에서는 세율인상에 따른 교환적 불공평성 증가 효과가 위험효과와 재산효과라는 경제적 유인 효과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세불공평성이 납세불순응으로 이어진다면 납세순응을 높이려는 조세정책에서도 과세불공평성의 해소와 이의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2. 선행연구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득원천, 조세체계, 납세자의 내적 인식에 따라 납세순응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실험연구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소득이 증여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와 같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납세자의 납세순응이 달라진다는 연구로는 Boylan and Sprinkle(2001)의 연구가 있다.

Boylan and Sprinkle(2001)은 소득유형(증여소득 대 근로소득)이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단계로 이루어진 실험을 설계했다. 즉 소득획득 단계와 세무신고단계가 그것이다. 소득획득단계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은 20달러를 증여받거나 한 시간의 복잡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20달러를 벌도록 요구된다. 세무신고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은 20달러 중 얼마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실험참가자들은 실험의 말미에 그들이 수령하는 돈의 액수는 그들이 과세소득으로 얼마를 신고하는가와 신고소득액이 세무조사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 이에 더하여 모든 참가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25%), 세율(20% 혹은 40%), 세무조사시 적발된 탈루소득에 대한 벌금(조세회피액의 150%)을 고지받는다. 그들의 연구결과 소득유형이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순응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증여소득의 경우에는 실험참가자들이 세율인상에 과세소득을 10% 적게 신고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근로소득의 경우 실험참가자들은 세율인상에 대하여 43% 더 높게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반응했는데 이는 세율과 납세순응과의 관계에 관한 경제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종합하면 개인들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요구된 시간과 노력의 양에 따라 그들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달리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세율, 세무조사비용, 징벌적 가산세 등과 같이 징세행정에 관련된 조세체계에 따라서 납세자의 납세순응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연구로는 Beck et al.(1991), Collins and Plumlee(1991), 정찬웅(1996)의 연구가 있다.

Beck et al.(1991)은 소득금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소신고에 대한 징벌적 가산율의 변화에 따라 신고소득이 달라지는지와 위험회피자의 경우 세율인상이 신고소득 증가를 가져오는지를 실험조사하였다. 그들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피실험자로 하였는데 세율(25%, 50%),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40%, 50%, 90%)과 과소신고 적발시 징벌적 가산율(20%, 200%)을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집단간 신고소득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중립자의 경우 세무조사받을 확률과 징벌적 가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소득의 수준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 두 변수는 신고소득의 분산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이 추첨식으로 증여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불확실성은 세무조사받을 확률과 징벌적 가산율과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하여 신고소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도 비교적 높았다. 즉 수입금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는 상황에 비하여 세무조사받을 확률과 징벌적 가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소득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세율인상에 따른 신고소득 증감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사위게임으로 지수

효용점수가 (-)인 위험회피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소득이 실험통화로 증여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받을 확률(50%)과 징벌적 가산율(20%)을 일정하게 하고 세율변화에 따른 신고소득금액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우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세율의 증가에 따라 신고소득금액이 증가하였다. 특히 세율은 소득금액 불확실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높아 소득금액의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세율증가에 따라 신고소득의 상승폭이 매우 컸다.

Collins and Plumlee(1991)는 세무조사계획, 세율변화, 징벌적 가산율 등이 과세소득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영학·경제학 전공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험분석 하였다. 세무조사계획은 세 가지 방법(무작위 추출, 기준을 이하 신고자 추출, 고수익 사업군 기준을 이하 신고자 추출), 두 가지 세율(30%, 60%), 두 가지 징벌적 가산율(회피세액의 120%, 회피세액의 200%)로서 피실험자들을 1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소득은 과제풀이 성과에 따라서 주어지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은 4회 실시되었으며 무지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2회에서 4회까지의 실험결과를 평균화하여 이를 다원공분산분석에 의하여 그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실험결과 세무조사계획과 세율과 징벌적 가산율과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 실험집단간 과소신고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무조사계획에 있어서 순전히 무작위 추출보다는 납세자가 보낸 신호(신고소득정보)에 근거한 세무조사계획(기준을 이하 신고자 추출, 고수익사업자 기준을 이하 신고자 추출)이 과소신고소득(=실제소득-신고소득)을 줄인다는 것이다. 집단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세율이 높고 조세회피액에 대한 징벌적 가산율이 낮을 때 과소신고액이 더 컸다. 즉 세율인상과 납세순응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세율인상으로 줄어든 소득을 벌충하기 위한 소득효과(income effect)보다 여가선용 등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과소신고회피와 수익획득노력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소신고 의욕자가 유의적으로 더 큰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소득을 적게 신고하려는 납세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수익획득 노력(노동공급의욕)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때는 세율인상으로 인한 수익획득 노력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대체효과가 완화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과소신고(납세불순응)는 납세순응을 경제행위로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촉진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추가적인 노동공급반응으로부터도 촉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작위추출이 아닌 세무조사 계획은 세율이 낮고 징벌적 가산율이 높을 때 과소신고 억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정찬웅(1996)은 납세자의 신고소득결정(납세순응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무조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가정하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실험실연구를 하였다. 이때 납세자의 신고소득은 기대효용이론에 의한 효용의 극대값이다. 실험연구는 회계학과 학부생들을 피실험자로 하여 실험회수는 벌금율 2단계, 세무조사확률 2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분기점 3단계의 조합에 의하여 피실험자는 세금납부 전의 소득에서 자기의 신고액에 의한 세금을 공제한 후의 가처분소득이 극대화되도록 신고액을 결정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지수효용함수가 음(-)인 위험회피자의 경우 세무조사확률증가, 회피세금에 대한 가산율증가, 누진세율의 적용분기점 이하의 세율과 초과 세율과

의 차이를 크게 할 때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납세순응이 소득유형이나 조세체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도덕감, 과세공평성 인식 등 내적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로는 Moser et al.(1995), Kaplan et al.(1997), Bodek and Hatfield(2003)가 있다. 이 중 Moser et al.(1995)의 연구는 수평적 과세불공평성 지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고, Kaplan et al.(1997), Bodek and Hatfield(2003)의 연구는 납세자의 도덕감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Moser et al.(1995)은 과세불공평성 지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로서 살펴보았다. 소득은 피실험자에게 실험통화로 실험 초에 증여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실험상황은 피실험자들이 조세부담의 상대적 공평성을 지각하는 상황과 동일한 소득을 가진 다른 납세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상대적 불공평성을 지각하는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세율변화에 대하여 신고소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규명하였다. 신고소득의 적정유무에 대하여 세무조사받을 확률 25%, 조세회피액에 대한 징벌적 가산율을 150%로 하고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기간을 달리하여 세율인상·인하시 소득을 신고하게 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조세부담의 상대적 공평성을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세율이 인하되는 상황설정에 신고소득의 차이가 별로 없었고, 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설정에서는 신고소득이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즉 과세공평성을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세율증감에 따라 신고소득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과세불공평성을 지각하는 그룹에서는 세율이 인하되는 상황에서 소득신고금액이 유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신고금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들을 위협회피자로 간주하여 세율인상에 신고소득금액의 증가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제학적 납세순응이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납세자들이 세율인상에 대하여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의 상대적 불공평성이라는 지각이 소득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Kaplan et al.(1997)은 도덕적 이성과 교육적 의사소통 효과가 조세회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98명의 MBA 1년차 학생을 피실험자로 하여 실험은 두 단계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피실험자들이 의사결정에서 도덕적 이성을 활용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문제정의테스트(defining issues test)로 추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피실험자들의 3개의 가능한 교육의사소통집단(법적 제재, 양심에의 호소, 통제상태)에 따라 4개의 가설적 조세시나리오에 답하는 것이다. 각 시나리오는 납세불순응 항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2개의 시나리오는 수익의 과소신고에 관한 것이고, 2개의 시나리오는 비용의 과대계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납세자의 조세회피금액(수익과소계상, 비용과대계상)을 점수화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한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피실험자들이 6개의 가설적 도덕적 난관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가를 지적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이성의 활용도를 측정하고, 도덕적 이성의 활용도가 높거나 낮음에 따라 2개의 카테고리 나눴다. 실험결과 첫째, 도덕적 이성을 높게 활용하는 피실험자들은 더 낮은 조세회피의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도덕적 이성을 낮게 활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법적 제재 의사소통을 받은 집단이 아무런 교육적 의사소통도 받지 않은 집단(통제집단)보다 조세회피의도가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 그러나 도덕적 이성을 낮게 활용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양심호소 의사소통은 통제집단의 조세회피의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의도를 낮추는 효과가 없었다. 셋째, 도덕적 이성을 높게 활용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조세회피의도에서 양심호소 의사소통을 받은 집단과 아무런 교육적 의사소통을 받지 않은 집단(통제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도덕적 이성을 높게 활용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법적 제재 의사소통도 조세회피의도의 유의한 감소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법적 제재 의사소통은 도덕적 이성을 낮게 활용하는 집단에게만 납세순응 개선효과가 있으며 도덕적 이성을 높게 활용하는 집단에게는 이미 납세순응도가 높아 어떠한 교육적 의사소통도 납세순응 개선효과가 없으므로 자발적 납세순응을 높이려는 교육적 프로그램은 도덕적 이성을 높이려는 교육적 관여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odek and Hatfield(2003)는 조세회피에 대한 태도, 조세회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조세회피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도덕적 이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 도덕적 이성이 계획행동에의 구성요소 즉 행위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상호작용하여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MBA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세 가지 조세회피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설문 응답결과를 로짓회귀분석으로 분석함으로써 검증하였다. 세가지 조세회피상황 시나리오는 홈오피스비용공제 시나리오(Home Office Scenario), 팁소득 시나리오(Tip Scenario), 기부금공제 시나리오(Charitable Contribution Scenario)이며 모두 부당한 비용공제, 소득누락과 관련돼 있다. 피실험자의 조세회피의도 더미변수(완전한 납세순응 0, 부분적 조세회피 1, 최대한 조세회피 2)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세회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도덕적 의무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로짓분석결과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이성 또한 세 가지 조세회피상황 시나리오(홈 오피스비용공제, 팁소득, 기부금 공제)에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적 이성과 계획행동에의 구성요소(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태도,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조세회피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세 가지 조세회피상황 시나리오 중 기부금공제 시나리오에서만 납세자의 조세회피의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획행동에의 구성요소에 도덕적 이성을 추가하였을 때에는 세 가지 조세회피상황 시나리오에서 납세자의 조세회피의도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 증가가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납세순응에의 영향요인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 결과
소득의 원천	Boylan and Sprinkle (2001)	실험연구	• 증여소득은 세율증가에 따라 신고소득의 차이가 없음. • 근로소득은 세율증가에 따라 신고소득의 유의한 (+)의 차이가 있음.
조세체계	Beck et al.(1991)	실험연구	• 소득금액의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세무조사받을 확률과 징벌적 가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순응이 높아진다.
	Collins and Plumlee(1991)	실험연구	• 세무조사대상추출에서 단순히 무작위 추출보다는 납세자가 보낸 신호(신고소득정보)에 근거한 조사대상 추출 방법이 신고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정찬웅(1996)	실험연구	• 위협회피자의 경우 세무조사받을 확률과 회피세금에 대한 가산율 증가는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납세자의 내적 인식	Moser et al.(1995)	실험연구	• 과세불공평성을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세율인상시 신고소득금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했다.
	Kaplan et al.(1997)	실험연구	• 도덕적 이성을 높게 활용하는 피실험자는 도덕적 이성을 낮게 활용하는 피실험자보다 조세회피의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Bodek and Hatfield (2003)	설문조사	• 납세자의 도덕적 이성은 조세회피의도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소득의 원천이나 조세체계 등 납세자 외적요인보다는 납세자의 내적요인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세순응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가를 검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납세자의 내적 인식으로서 과세불공평성 지각과 도덕감을 거론하고 있으나 도덕감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상황의 설계에는 도덕감수준측정과 도덕감활용 측정 등 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세불공평성 지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세불공평성 지각 실험상황은 피실험자들에게 그들의 세율이 동일 소득의 다른 피실험자들보다 높다는 것은 통지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실험상황을 설계할 수 있다.

III. 실험설계

1. 가설설정

조세보고에 대한 전통적 경제적 접근법은 국세청 세무조사정책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납세자는 조세회피시 조세부담절감액과 조세회피적발시의 징벌금 가산세 부담액을 비용편익 교환관계에 전주어 소득 중 얼마를 신고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대효용극대화 추구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Allingham and Sandmo(1972)에 의하여 개발된 이 경제적 모델은 납세자가 절대적 위험회피자일 때 세율 인상시 위험효과와 재산효과에 의하여 신고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제적 모델의 예측은 조세 수평적 공평성과 같은 납세자 인식요인을 추가할 때에는 지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 조세의 수평적 불공평성 지각 상황에서는 이 수평적 불공평성이 세율인상으로 결과되는 교환적 불공평성²⁾ 지각과의 결합효과에 의하여 경제적 접근법에서의 조세보고 예측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수평적 불공평성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신고소득금액을 줄여 납부세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율인상으로 인한 교환적 불공평성의 효과는 납세자들이 다른 납세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공평성을 지각할 때 경제적 유인 효과를 지배한다고 가정한다. 즉 똑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다른 납세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조세를 납부할 때 그 납세자는 상대적 불공평성을 지각하고 이 상대적 불공평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도록 신고소득수준을 낮출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피실험자의 행동은 경제적 모델에서의 비용편익 교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보다는 수평적 그리고 교환적 불공평성의 지각을 포함하는 납세자의 내적 인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소득의 다른 피실험자군보다 세율이 높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평적 불공평성을 조작하고 세율을 인상시킴으로써 교환적 불공평성을 조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그리고 교환적 불공평성 지각이 납세자의 조세보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평성 지각의 결합효과가 신고소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세율변화로부터 결과하는 교환적 불공평성에서의 변화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다른 납세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대우되는지(수평적 불공평성) 또는 다른 납세자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우되는지(수평적 공평성)에 달려있다고 가정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³⁾.

- 2) 세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와 서비스 수준이 일정하다면 (본 연구에서는 0임)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지각하는 교환적 불공평성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수평적 불공평성하에서 교환적 불공평성의 증가효과가 경제적 모델의 효과를 지배한다면 신고소득은 줄어들 것이다.
- 3) Moser et al.(1995)은 수평적 불공평성 인식집단, 수평적 공평성 인식집단 내에서의 세율변화(교환적 불공평성)에 따른 신고소득의 유의한 증감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평적 불공평성 지각 상황에서는 납세자들이 세

가설 I. 수평적 불공평성 지각집단은 수평적 공평성 지각집단보다 신고소득액이 작을 것이다.

가설 II. 수평적 불공평성 지각집단과 수평적 공평성 지각집단과의 신고소득액 차이는 세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III. 수평적 불공평성 지각집단과 수평적 공평성 지각집단과의 신고소득액 차이는 불공평성 지각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IV. 수평적 불공평성 지각집단과 수평적 공평성 지각집단과의 신고소득액 차이는 세율과 불공평성 지각유무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연구설계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실험 초에 증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세율은 두 가지(20% 대 40%), 실험집단은 조세부과의 수평적 공평성 지각 그룹 대 수평성 불공평성 지각 그룹으로 구분한다. 수평적 불공평성하에서의 피실험자들은 각 실험기간 초에 당해 기간에 다른 납세자들이 직면하는 세율에 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않는다. 수평적 불공평성하에서의 피실험자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세율보다 동일소득의 다른 납세자들에 대한 세율이 더 낮다라는 것을 통지받는다. 실험은 두 번에 걸쳐 1주일 간격으로 수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20% 세율 적용 상황이고, 두 번째는 40% 세율 적용 상황이다. 피실험자는 납부세액과 피세무조사시의 징벌적 가산세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이 극대화되도록 신고액을 결정할 것을 주문받고 이에 따라 보상(세법교과목의 과제점수)을 받는다는 것을 고지받는다.

나. 실험과정

가설 I, II, III, IV를 검정하기 위하여 수평적 공평성(불공평 대 공평)과 교환적 불공평성이 조작되는 실험을 설계하였다. 세율인상이 교환적 불공평성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재의 양은 일정하게(0) 유지하였다.

(1) 실험 1회차

실험 1회차는 20% 세율 상황이다. 대강의실에 모인 실험참가자 72명을 임의로 36명씩 2반으로 나눠 별도의 실험실에 배치하였다. 각 실험실에는 실험자가 실험참가자에게 입장순으로 번호표를 지

율이 상승할 때 조세신고를 줄일 것이라는 것과 수평적 공평성 인식집단에서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는 달리 수평적 불공평성 지각집단과 수평적 공평성 지각집단과의 신고소득액의 차이유무와 이 차이의 원인이 세율, 불공평성 지각유무, 불공평성 지각과 세율과의 상호작용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급하면서 번호표가 부착된 지정 좌석에 착석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자는 소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신고서를 직접 나눠준다. 소득은 실험 초에 20,000원이 증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실험자는 신고소득액을 얼마로 적는가는 피실험자의 자유의사에 의하되 실험참가에 대한 보상은 과세소득으로 얼마를 신고하느냐와 신고소득금액을 세무조사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지한다. 또한 실험은 2회 수행되며 전체 실험참가자 72명의 가처분소득 평균 순으로 3등분하여 1등급(24명)에는 세법 과제점수 100점, 2등급(24명)에는 세법 과제점수 90점, 3등급(24명)에는 세법 과제점수 80점을 부여한다는 것을 통지받는다. 모든 실험참가자들은 ①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② 그들의 신고소득의 적정유무를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은 25%이며, ③ 피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회피세금에다가 회피세금의 100%의 징벌적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받는다. 피조사대상 선정확률은 동일하다고 통지받는다. 이때 제1그룹은 제2그룹의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않으며 제2그룹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인데 비하여 제1그룹의 피실험자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신고서 작성요령과 함께 통지받는다.

(2) 실험 2회차

실험 2회차는 40% 세율 상황이다. 실험참가자 72명을 대강의실에 집결시킨 후 실험 1회차와 같이 임의로 36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눠 별도의 실험실에 배치하였다. 각 실험실에는 실험자가 실험참가자에게 입장 순으로 번호표를 지급하면서 번호표가 부착된 지정된 자석에 착석시킨다. 실험참가자에 대한 통지내용은 실험 1회차와 동일하다. 이 때 제1그룹은 제2그룹의 적용세율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않으나 제2그룹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40%인데 비하여 제1그룹의 피실험자에게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신고서 작성요령과 함께 통지받는다.

다. 실험참가자

실험참가자들은 2005학년도 본 대학 세무회계과 산업체위탁생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학년생이 34명이고 2학년생이 38명이다. 실험은 4월초 1회차 실험이 실시되고 1주일 후 2회차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통화는 20,000원 쿠폰을 지급되었고 소득 유형은 증여소득으로 의제되었다⁴⁾. 72명은 대강의실에 집결한 학생 전부를 좌측줄에서 36명을 선발하여 제1그룹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2그룹으로 하였다. 실험은 재무회계실무와 부가가치세법 강의시간에 맞추어 19:20분에 시작하였으며 실험실 착석, 주의사항 고지, 소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신고서 작성, 설문지 작성, 해산을 40분간 이내에 끝마치기로 하였다. 세무조사대상 신고서 추출은 1회차는 3번에서 체계적 추출, 2회차는 2번에서 체계적 추출을 실시하였다. 피실험자의 세후 소득금액은 피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4) 연간급여가 35,000,000원인 실험참가자의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16,826원($35,000,000 \div 52 \text{주} \div 5 \text{일} \div 8 \text{시간}$)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소요시간이 40분이므로 실험통화 20,000원은 적절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Collins and Plumlee(1991)의 연구에서는 소득획득소요시간이 2시간 30분이며 실험통화는 39달러이다.

되지 않은 실험참가자의 경우에는 $20,000\text{원} - \text{신고세액} \times \text{세율}$ 이고, 피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실험 참가자의 경우에는 $20,000 - \text{신고세액} \times \text{세율} - \text{미신고세액} \times \text{세율} \times 200\%$ 이다. 미신고소득에 대한 징벌적 가산율은 100%에 해당한다. 따라서 40% 세율적용에서의 최저 가처분소득은 4,000원(전액 미신고자)이고, 20% 세율적용에서는 12,000원(전액 미신고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이 모두 소득세 납세자이고 적어도 1회 이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서나 사업소득 신고 경험을 지닌 자들이다. 따라서 실험상황을 이해하고 실험에 사용되는 조세용어와 문맥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험상황에서 조세문맥이 사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험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⁵⁾.

본 연구에서의 실험설계의 특징은 실험참가자들이 모두 산업체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들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경험이 있으므로 실험상황에 대한 무지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으며 실험참가자들이 실험에 2회 참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하여 실험 간격을 1주일로 하였다는 것이다.

라. 가설검정방법

과세공평성 지각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연구로서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먼저, 수평적 불공평성 지각집단은 수평적 공평성 지각집단보다 신고소득액이 작을 것이라라는 가설 I은 20%, 40% 세율 각각에서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에 대한 t -값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두 집단간의 신고소득액이 유의한 차이가 날 경우 그것이 세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불공평성 지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세율과 불공평성 지각유무와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가설 II, III, IV 검증은 신고소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세율, 과세공평성 인식유무를 독립변수로 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에 의하여 검증한다.

5) Wartick et al.(1999)은 대학생과 대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60명의 실험대상자 상대로 실험상황에서 조세문맥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증여소득, 신고소득에 대한 세율 30%, 세무조사확률 30%, 감사적발시의 미신고소득에 대한 세율의 가산세를 100%로 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그 결과 조세문맥이 사용된 상황에서의 신고금액이 조세문맥이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신고금액보다 많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실험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25세 이상의 실험대상자(세금납부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경우에는 조세문맥이 사용된 상황에서의 신고금액이 조세문맥이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신고금액의 2배에 달하였으나 25세 미만의 실험대상자에서는 조세문맥의 사용여부에 따른 신고금액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표 2>는 과세공평성 인식이 신고소득액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험연구인 본 연구에 참가한 72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참가자는 모두 직장생활이 18개월 이상이고 2004년도 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표 2> 실험참가자특성

인구적 특성	내 용			비고
	구분	인원수	%	
성별	남	21명	41	
	여	51명	59	
연령	20세 ~ 29세	43명	60	
	30세 ~ 39세	22명	31	
	40세 이상	7명	9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3명	4	
	2,000만원 ~ 3,000만원	33명	46	
	3,000만원 ~ 4,000만원	26명	36	
	4,000만원 ~ 5,000만원	6명	8	
	5,000만원 이상	4명	6	
산업체경력년수	평균 11.8년			최대 : 24년 최저 : 2년
소득종류	근로소득	67명	93	
	사업소득	5명	7	
직종	제조업	19명	26	
	서비스업	53명	74	

실험참가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수적으로는 적으나 직장근무연수·연령 등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실험 집단별(2회×2집단=4집단) 신고소득액에 관한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집단별 기술통계⁶⁾

(단위 : 원)

구분	집단 1 (세율 20%, 공평성 인식)	집단 2 (세율 20%, 불공평성 인식)	집단 3 (세율 40%, 공평성 인식)	집단 4 (세율 40%, 불공평성 인식)
참가인원	36명	36명	36명	36명
평균신고액	14,388	12,994	14,477	12,208
최소신고액	8,000	6,000	6,000	5,000
최대신고액	20,000	20,000	20,000	20,000
표준편차	2,831	3,379	3,721	3,087
중위수	14,500	14,000	15,000	12,000
최빈값	14,000	14,000	15,000	10,000

<표 3>을 보면 신고소득액 중 평균신고액이 가장 높은 집단을 집단 3(세율 40%, 공평성 인식)이고 평균신고액이 가장 낮은 집단은 집단 4(세율 40%, 불공평성 인식)이다. 집단 1(세율 20%, 공평성 인식)과 집단 3(세율 40%, 공평성 인식)의 평균신고액은 비슷하고, 또한 집단 2(세율 20%, 불공평성 인식)과 집단 4(세율 40%, 불공평성 인식)의 평균신고액 역시 비슷하다. 그러나 집단 1(세율 20%, 공평성 인식)과 집단 2(세율 20%, 불공평성 인식)의 평균신고액은 뚜렷한 차이가 있고, 마찬가지로 집단 3(세율 40%, 공평성 인식)과 집단 4(세율 40%, 불공평성 인식)간에는 평균신고액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험참가자들의 신고소득액 결정에 있어서 과세공평성 인식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실증분석결과

가. 공평성 지각 유형별 분석결과

과세공평성 지각이 실험참가자들의 신고소득액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세율에서의 공평성 인식집단과 불공평성 인식집단간의 신고소득액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평균의 차이에 대한 t검정으로 알아보았다.

<표 4>와 <표 5>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6) 실험참가자의 1차 가처분소득과 2차 가처분소득의 평균은 최저 10,600원에서 최고 17,800원까지이며 평균은 15,092원이다. 실험참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과제성적 1등급(가처분소득신고순 상위 25명)의 가처분소득은 17,800원에서 16,100원까지이고 2등급(25명)은 16,000원에서 15,000원까지이며, 3등급(22명)은 14,800원에서 10,600원까지이다. 1등급과 2등급이 24명을 초과한 것은 신고액이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 4〉 공평성 지각 유형별 신고소득액 차이분석(20% 세율)⁷⁾

구분	Levi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검정)
등분산이 가정됨	2.804	0.099	1.898	70	0.062

주) 세율 20%, 공평성 인식 : 평균신고액 14,388, 표준편차 2,831
 세율 20%, 불공평성 인식 : 평균신고액 12,994, 표준편차 3,379

〈표 5〉 공평성 지각 유형별 신고소득액 차이분석(40% 세율)

구분	Levi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검정)
등분산이 가정됨	1.202	0.277	2.816	70	0.006

주) 세율 40%, 공평성 인식 : 평균신고액 14,477, 표준편차 3,721
 세율 40%, 불공평성 인식 : 평균신고액 12,208, 표준편차 3,087

<표 4>를 보면 20% 세율에서 공평성 지각집단과 불공평성 지각집단간에는 약한 정도의 유의한 평균신고액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p=0.062$), <표 5>에서 보면 40% 세율에서는 공평성지각집단과 불공평성 지각집단에는 매우 유의한 평균신고액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p=0.006$). 더구나 그 차이의 방향이 가설 I에서와 같이 불공평성 지각집단의 신고소득금액이 공평성 지각집단의 신고소득액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은 한 과세불공평성 인식은 신고소득액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은 채택된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공평성 지각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Moser et al.(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의 상대적 불공평성 지각집단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신고소득금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율차이에 따른 신고소득액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20% 세율 : 12,994, 40% 세율 : 12,208)

7) <표 4>와 <표 5>에서 Levine의 등분산검정결과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은 F의 유의확률이 각각 0.099, 0.277로서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t값은 등분산이 가정될 경우의 값을 취해야 한다.

나. 과세공평성 인식과 세율에 따른 분석결과

그러나 신고소득액 결정에 과세불공평성 인식 외에 세율상승 또는 세율상승과 과세불공평성 인식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소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세율(20% 대 40%), 과세공평성 인식(공평성 인식 대 불공평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과세공평성 인식과 세율에 따른 평균신고액 차이 검정

구분	제곱근(SS)	자유도(F)	평균제곱(MS)	F	유의확률
세율	4,375,069	1	4,375,069	0.409	0.524
과세공평성	121,000,000	1	121,000,000	11.289	0.0018*
세율×과세공평성	6,890,625	1	6,890,625	0.644	0.424
오차	1,500,000,000	140	10,705,030		
수정합계	1,630,000,000	143			
adj R ²	0.081				

주) * : 1%수준에서 유의적

<표 6>을 보면 과세공평성 주효과만 유의적이고, 세율 주효과와 세율과 과세공평성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적이지 않다. 이는 본 실험연구에서의 실험참가자들은 신고소득액 결정에 있어서 세율보다는 과세공평성 인식에 뚜렷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소득은 과세공평성 인식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갖는다는 가설Ⅲ는 채택되고, 세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Ⅱ와 세율과 과세공평성 인식여부와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Ⅳ는 기각된다. 본 연구에서 세율 주효과는 유의적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득원천이 소득획득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증여소득일 경우 세율증가에 따라 신고소득액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Boylan and Sprinkle(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 납세자들의 신고소득액 결정에는 과세공평성 인식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세불공평성을 인식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소득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세율 상승에 따른 신고소득액의 증감효과나 세율과 과세공평성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증감효과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납세순응을 높이려는 과세당국의 노력에 있어서 세무조사와 징벌적 가산을 부과 등 조세체제와 관련된 노력 외에 과세공평성 지각 등과 같은 납세자의 내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자 등의 소득금액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과세체제를 개선하여 소득원천이 다른 소득자들의 과세불공평성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공평성 제고 결과를 납세의무자들에게 홍보 등의 방법으로 주지시키는 것이 자발적 납세순응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율이나 징벌적 가산율, 피세무조사확률 등 징세와 관련된 조세행정체계 외에도 과세공평성 지각과 같은 납세자의 심리적요인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실제소득 대비 신고소득액의 비율로 파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oser et al.(1995)의 연구에서와 같이 과세공평성 인식이 조세신고액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분석하였다. 그러나 Moser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과세공평성 또는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 내에서의 세율변화시 신고소득액 차이를 각각 분석한 것인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세율에서 과세공평성 인식집단과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과의 신고소득액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과세불공평성 인식이 납세불순응을 가져온 결과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율이 동일할 경우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의 과세신고액은 과세공평성 인식집단의 그것에 비하여 유의한 음(-)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신고소득액의 결정에 세율, 과세불공평성 지각유무, 세율과 과세불공평성 지각유무와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세 경험이 있는 본 대학 세무회계과에 재학하고 있는 산업체위탁교육생 72명을 피실험자로 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20% 세율 상황과 40% 세율 상황으로 2회 수행되었으며 학습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1주일 간격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참가자 72명은 과세공평성 지각집단과 과세불공평성 지각 집단에 임의로 배정되었으며 소득은 실험 초에 20,000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과세공평성 지각집단에서는 실험 후 실험참가자에 대한 보상(세법과목 과제점수)은 얼마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느냐와 자신의 과세소득신고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은 25%이며, 징벌적 가산율은 회피세금의 100%이다. 그리고 다른 집단의 적용 세율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다. 이에 비하여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에서는 동일 소득의 다른 집단에서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의 1/2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며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대해진다는 것을 통지받는다.

본 실험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 세율 상황과 40% 세율 상황 모두에서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의 과세신고액은 과세공평성 인식집단의 과세신고액에 비하여 유의한 음(-)의 차이를 보였으며 40% 세율 상황에서는 차이의 유의성이 더 컸다. 이는 과세불공평성 인식이 납세자의 납세불순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과세공평성 인식집단과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 내에서의 세율의 차이에 따른 신고소득액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참가자 전체에서도 20% 세율 적용집단과 40% 세율 적용집단간에는 유의한 신고소득액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과세공평성 인식집단에서는 세율변화에 따른 유의한 신고소득액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는 Moser et al(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에서는 세율증가에 따라 과세신고액이 유의한 음(-)의 차이를 보였다는 Moser et

al.(199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과세공평성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납세 순응에 미친 영향이 다른 세율변화 효과 등을 지배한 결과로 판단되며 추후 실험상황을 달리하여 분석해 볼 만한 연구과제로 여겨진다.

셋째, 실험참가자의 과세신고액 결정에 있어서 세율변화, 과세불공평성 인식, 세율변화와 과세공평성 인식여부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소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세율(20%, 40%)과 과세불공평성 인식유무(공평성 인식, 불공평성 인식)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세불공평성 인식 주효과는 유의적이었지만 세율 주효과, 세율과 과세불공평성 인식여부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세공평성 인식집단과 과세불공평성 인식집단과의 신고소득액의 유의한 차이는 과세불공평성 인식이 공격적 세무신고(신고소득액 감소)로 이어진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불공평성 인식이 납세순응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실험상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단지 다른 집단의 적용 세율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과세공평성에 관한 인식을 갖도록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과연 실험참가자들이 자기 집단의 적용 세율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다른 집단의 적용 세율은 언급하지 않는 것을 과세공평성 상황으로 이해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본 실험상황에서의 소득신고액 결정이 실험상황이 아닌 실제소득의 신고시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상황 자체가 과세공평성 인식에 관한 상황통제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실제 소득세 신고시의 행동이 실험상황에서의 행동과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과세불공평성 인식이 납세불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의미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정찬웅. 1996.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결정에 관한 실험실 연구”, 『회계학연구』 제21권 제2호(1996.6), pp.19-44.
- Allingham, M. G., and A. Sandmo. 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 323-328.
- Beck, P. J., and W. O. Jung. 1989. “Taxpayers’ Reporting Decisions and Auditing under Information Asymmetry”, *The Accounting Review*, 64 : 468-487.
- Beck, P. J., J. S. Davis, and W. O. Jung. 1991. “Experimental Evidence on Taxpayer Reporting under Uncertainty”, *The Accounting Review* 66 : 535-558.
- Bodek, D.D., and R. C. Hatfield. 2003. “An Investig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Role of Moral Obligation in the Tax Compliance”,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15 : 13-38.
- Boylan, S. J., and G. B. Sprinkle. 2001.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ax Rates and Compliance : The Effect of Earned vs. Endowed Incom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 75-90.
- Collins, J. H., and R. D. Plumlee. 1991. “The Taxpayer’s Labor and Reporting Decisions : The Effect of Audit Schemes”, *The Accounting Review* 66 : 559-576.
- Kaplan, S. E., K.J. Newberry, and P. M. J. Reckers. 1997. “The Effect of Moral Reasoning and Educational Communications on Tax Evasion Intention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 : 38-54.
- Moser, D. V., J. H. Evans III, and C. K. Kim. 1995. “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Exchange Inequity on Tax Report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0 : 619-634.
- Phillips, J., and R. C. Sansing. 1998. “Contingent Fees and Tax Compliance”, *The Accounting Review* 73 : 1-18.
- Reinganum J. F., and L. L. Wilde. 1986. “Equilibrium Verification and Reporting Policies in a Model of Tax Complianc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7 : 739-760.
- Swenson. C. W. 1988. “Taxpayer Behavior in Response to Taxation :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7 : 1-28
- Wartick, M. L., S. A. Madeo, and C. C. Vines. 1999. “Reward Dominance in Tax-Reporting Experiments : The Role of Contex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1 : 20-31.
- Yitzhaki, S. 1974.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 : 201-202.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 of Taxation Unfairness Perception on Tax Compliance

Park, Ju-Cheul* · Lee, Nam-woo**

— <Abstract> —

In this paper we conducted an experiment to examine whether taxpayer's tax reporting is affected by his perception about taxation unfairness. We hypothesized that taxpayer who perceived horizontal taxation unfairness reports less income relative to others with equal income who perceive taxation fairness.

And we hypothesized that taxpayer's tax reporting decision is affected by tax rate, perception of taxation unfairness, and taxation unfairness perception by tax rate interaction effect.

Seventy-two college students who are income tax taxpayer at present time participated in two of four experimental group.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paid experiment currency amounted 20,000 won at the beginning of the experiment.

Each of two experimental periods began with experiment participants reading their information. In the taxation fairness settings this information included the tax rate(20% or 40%) for that period and audit probability(25%), the penalty amounts equal to 100 percent of the tax evaded. But in the taxation unfairness settings this information included the tax rate (20% or 40%) for that period as well as the tax rate (10% or 20%) of some other hypothetical taxpayers.

Our experimental evidence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 participants in taxation unfairness condition reported significantly less income comparative to experiment participants in taxation fairness condition at two tax rate settings and significance was higher at 40% tax rate settings. Thus we concluded that experiment participants' perception of taxation unfairness resulted tax incompliance.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ax report amount between the experiment participants in 20% tax rate setting and in 40% tax rate setting.

Third, the experiment participant's taxreporting level was affected by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taxation unfairness, but was not affected by the tax rate, the taxation unfairness perception by the tax rate interaction effect.

<Key words> taxation unfairness, tax incompliance

* Professor, Dept. of Tax Accounting, Ulsan College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ax Accounting, Ulsan college